

【 4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5. 1. 10.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 관련조문의 반복어휘를 간결화하고 감면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2005년부터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급격하게 인상되어 납세자들의 집단조세저항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 1. 20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하고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함 (안 제2조)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 부여(안 제2조 및 제3조)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승합자동차 세율을 유지하고, 그 외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는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 2)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 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u>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u></p> <p>2. <u>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제정 2002·1·26 법률제6650호
개정 2004·1·20 법률제710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1·20>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4·1·20>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추 16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전문개정	1993. 5. 25	교 통 부 령 제	1002호	
개정	1994. 1. 8	교 통 부 령 제	1019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995. 7. 21	건설교통부령제	22호	
	1995. 12. 30	건설교통부령제	44호	
	1997. 1. 17	건설교통부령제	90호	
	1997. 8. 25	건설교통부령제	116호	
	1998. 8. 20	건설교통부령제	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9. 2. 19	건설교통부령제	174호	
	1999. 6. 28	건설교통부령제	198호	
	2001. 4. 28	건설교통부령제	279호	
	2003. 2. 25	건설교통부령제	350호	
	2004. 8. 6	건설교통부령제	40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 2 항·동법 제32조제 1 항 및 동법 제5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7, 2003. 2. 25>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 7. 21, 97. 1. 17, 97. 8. 25, 99. 2. 19, 2001. 4. 28, 2004. 8. 6>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추 171)

第41編 陸運・航空・觀光 第6章 道路運送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및 좌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좌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 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좌석기준점”이라 함은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 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좌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및 30. 삭제 <2001·4·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추 171)

“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개정 시달

1. 행정자치부 세제과-2271(2004.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5월~10월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금년말까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05.1.1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2004.12.20까지 조례개정일정 및 개정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1. 2005년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개정안 1부.
-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개정내용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머,버(세무·세정과장)

★지방세무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세정과장

별조자

시행 세정과-14182 (2004.11.01.) 접수 세무과-16103 (2004.11.01.)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 / http://www.gyeonggi.go.kr 지)

전화 031-249-2311 /전송 031-249- / 사 용 자 이 D / 공개 cs0303@yeonggi.go.kr

00도00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0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로 하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를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하면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을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으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를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으로 각각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00도00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에맞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u>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후단생략)</u>	② _____ _____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_____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u>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u>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후단생략)</p> <p>제6장 보 칙 <u><신 설></u></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_____ _____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_____하여 (현행과같음)</p> <p>제6장 보 칙 <u>제0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u> <u>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u></p>

“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세 감면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2834(2004.12.21)호와 관련입니다.

2.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나,

3. 내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을 개정하고자 하니, 시·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지방의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자동차세 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 1부. 끝.

경기도



수신자 머,버(세무·세정과장)

★ 지방세우주사 최원삼 지방행정사무관 최민성 세정과장 12/27 방광면

협조자 지방행정사무관 오동희

시행 세정과-16992 (2004.12.27.) 접수 세무과-19858 (2004.12.28.)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2311 /전송 031-249- / 사 용 자 I D / 공개 cs0303@yeonggi.go.kr

○○도○○시 ·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도○○시 ·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15조의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57호
 개정 2003. 12. 1 조례 제148호
 2004. 1. 1 조례 제151호
 2004. 6. 21 조례 제1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추 3)

양주시시세감면조례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 12. 1>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4. 1. 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추 3)

-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

-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4. 1. 1>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 1. 1>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 1. 1>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추 1)

양주시시세감면조례

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6. 21>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4. 1. 1>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추 3)